

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조계원 · 김 현
김재원 · 황 희 · 주철현
노종면 · 정준호 · 최민희
이정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관광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,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, 「관광기본법」은 1975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기본적인 골격과 핵심 조항이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.

최근 K-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선호는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고, 관광산업이 디지털 전환, 지역 소멸 위기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과 미래지향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「관광기본법」은 이와 같은 흐름을 충분히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국가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
가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「관광 기본법」이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이 법은 관광정책의 기본방향·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관광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진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주요 책무와 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
다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관광계획을 수립하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7조).

라. 관광정책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·조정 등 국가의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함(안 제9조).

마. 국가는 관광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

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함(안 제10조).

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 개선, 국민의 관광 활성화,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, 국제 관광교류의 촉진, 지역관광의 활성화,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관광권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).

사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, 관광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안 제18조 및 제19조).

아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, 관광통계의 작성·관리, 관광객의 안전 확보, 관광객의 권익보호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(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).

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관광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관광기본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관광정책의 기본방향·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관광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확대·보장하고,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, 국가 간 및 지역 간 상호이해를 넓히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관광”이란 여가, 사업, 그 밖의 목적으로 일상적인 거주지에서 다른 장소로 여행하는 행위를 말한다.

2. “관광객”이란 관광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관광산업”이란 관광객에게 운송·숙박·음식·운동·오락·휴양 등 관광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4. “관광사업자”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·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.
5. “무장애 관광”이란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·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.
6. “관광자원”이란 관광에 활용되거나, 활용될 수 있는 유·무형의 자연적·역사적·사회적 자원을 말한다.
7. “관광권”이란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고려하여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및 도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자연·문화·역사자원 등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 권역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관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국민의 관광향유권 확대·보장
2. 국제적 수준의 관광여건 마련 및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
3. 국제 관광 교류의 확대
4.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간 연계·협력 촉진
5.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이용·개발 및 활용

6.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

7. 공정한 관광시장 질서의 확립

8. 관광객의 안전 및 권익 보호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관광사업자의 책무) 관광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관광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,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 질서의 확립과 관광객의 권리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

제2장 관광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제7조(국가관광기본계획 등의 수립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발

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관광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
2. 국민의 보편적 관광 활동 확대 및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·지원에 관한 사항
3.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4.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
5. 국내외 관광 여건 및 동향에 관한 사항
6. 관광산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
7. 관광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8.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9.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관광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10.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
11. 관광 시설의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관광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

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관광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기본계획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다른 계획과의 관계)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관광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,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광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 또는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국가관광전략회의) ① 국가의 관광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(이하 “전략회의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관광정책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·조정
2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·반영

3.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
 4.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.
 -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, 이를 주재한다.
 - ④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관광진흥개발기금) ① 국가는 관광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3장 관광의 진흥과 촉진

제11조(관광 여건의 개선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여행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관광객 이용 숙박·교통·휴양 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
2. 국내관광에 관한 정보 제공
3. 국내관광 서비스의 품질 향상

4. 그 밖에 여행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2조(국민의 관광 활성화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국민의 휴가·휴일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2.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
3.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국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3조(외래관광객의 유치 촉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·육성
2.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홍보
3. 외래관광객의 출입국 등 관광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

4. 그 밖에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4조(국제 관광교류의 촉진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, 국가 및 지역 간 관광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교류 확대 및 협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관광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15조(지역관광 활성화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육성과

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관광의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16조(관광자원 개발과 활용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17조(관광권의 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권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광권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추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 조성

제18조(관광산업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19조(관광 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 발전과 국민의 관광참여 및 편의성 제고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인력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 촉진, 고용의 안정,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안전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0조(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연구와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1조(관광통계의 작성·관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에 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산업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장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22조(관광객의 안전 확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은 국제적 관광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

야 한다.

③ 관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객의 안전 보호 및 보장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3조(관광객의 권익보호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관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객의 권익보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4조(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,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제25조(연차보고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(이하 “연차보고서”라 한다)를 정기국회개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26조(관광의 날) 국민의 관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

매년 9월 27일을 관광의 날로 정한다.

제27조(포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·법인·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 및 4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